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78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김승원·조 국·박홍배

김현정 · 안태준 · 이원택

최민희 • 조계원 • 이건태

박균택・박지원・박선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, 검찰총장, 판사 및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의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,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수사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수사처가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음.

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것임 (안 제26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처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	제26조(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
와 증거물 송부 등) ① · ②	와 증거물 송부 등) ① ·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처리
	하는 검사는 수사처검사에게
	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.